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152

발의연월일 : 2026. 7. 24.

발 의 자 : 백혜련・허성무・남인순
이광재・곽상언・박희승
이강일・이수진・이재정
박상혁・염태영・김문수
의원 (12인)

제안이유

현행 법체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재난의 예방・대응・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난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건강영향을 장기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재난 노출자에 대한 보건의료 및 정신건강에 관한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미비한 실정임. 특히 대규모 사회재난 및 감염병 재난 등의 발생 이후 재난 노출자에게 우울・불안・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건강 문제와 호흡기・심혈관계 질환 등 신체적 건강문제가 장기간 지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개별 재난별 임시지원이나 단기적 대응 중심으로 운영되어 장기적인 건강영향 조사 및 추적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재난의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재난 현장의 구조・수습・복구 활동 참여자, 재난 영향권 주민, 목격자 및 유가족 등 다양한 재난

노출자가 신체적·정신적 건강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와 사례관리 체계는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아니함. 아울러 재난 관련 건강정보와 의료이용 자료 등을 연계·활용하기 위한 공적 관리체계가 미비하여 재난 이후 장기 건강영향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정책적 대응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재난건강영향평가 및 장기 추적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질병관리청장을 중심으로 재난보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며, 재난 노출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재난취약계층 우선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사회적 회복력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장기적인 건강 변화를 추적·관리하며, 재난 노출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 및 정신건강에 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회복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노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3조).

다. 질병관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하여 해당 재난이 재난 노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난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6조).

라. 질병관리청장은 재난건강영향평가 결과 보건학적 위험도가 높은 재난 노출자에 대하여 장기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질병관리청장은 재난건강영향평가, 장기 추적조사 및 재난 노출자 사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보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안 제8조).

바. 재난 피해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재난보건심의위원회를 둠(안 제9조 및 제10조).

사.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재난 노출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건의료 및 정신건강에 관한 복지서비스를 통합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재난보건 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

법률 제 호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장기적인 건강 변화를 추적·관리하며, 재난 노출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 및 정신건강에 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회복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재난 노출자”란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재난 발생 당시 또는 그 이후 일정 기간 해당 재난의 영향권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등 환경적 위험 요인에 노출된 사람, 재난의 구조·수습·복구 활동 참여자, 재난 현장의 목격자 및 유가족 등을 포함한다.
3. “재난취약계층”이란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특히 취약한 집단으로서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저소

득층, 이주민 및 난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노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재난의 특성 및 보건학적 위험도에 따른 적절한 보건의료 및 정신건강에 관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노출자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노출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재원의 확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재난건강영향평가 및 장기 추적조사 등

제6조(재난건강영향평가) ① 질병관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하여 해당 재난이 재난 노출자의 신체적·정

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난건강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난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재난건강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난 노출자의 주요 신체 및 정신질환 발생 현황과 변화
2. 재난 노출자의 의료기관 이용 실태
3. 재난의 특성에 따른 건강 영향
4. 재난취약계층의 건강 특성
5. 그 밖에 재난 노출자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질병관리청장은 재난건강영향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재난건강영향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재난건강영향평가 및 결과 공표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장기 추적조사)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재난건강영향평가 결과 보건학적 위험도가 높아 제9조에 따른 재난보건심의위원회가 장기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재난 노출자에 대하여 장기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장기 추적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난 노출자와 비노출자 또는 노출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주요 질환 발생·악화 및 사망의 차이

2. 재난 노출 이후 시간 경과에 따른 신체·정신건강 상태 및 삶의 질 변화

3. 재난 노출과 특정 건강결과 간 인과관계 및 위험요인·보호요인 분석

4. 재난 노출자의 의료이용·복지이용 패턴 변화

5. 그 밖에 장기 건강영향 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 추적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 추적조사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재난 노출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장기 추적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재난보건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재난건강영향평가, 제7조에 따른 장기 추적조사 및 제11조에 따른 재난 노출자 사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보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재난보건 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1. 재난 노출자의 인적 사항 및 노출 유형·기간·강도 등 노출 특

성에 관한 정보

2. 재난건강영향평가 및 장기 추적조사의 결과에 관한 정보

3. 재난 노출자의 진료 기록, 투약 정보, 기저질환, 응급의료 이용 및 사망 정보 등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

4. 제12조에 따른 재난보건 수행기관의 사례관리 기록

5. 재난 유형별 환경·기상·대기오염 등 재난 관련 노출 지표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질병관리청장은 재난보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번호

2.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3.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

4. 「암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의 내원 및 응급의료 제공 현황에 관한 자료

6.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구급활동 및 이송 현황에 관한 자료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피해 보고 및 복구 지원 내역

8. 그 밖에 재난보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질병관리청장은 재난정보 보건시스템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질병관리청장은 재난정보 보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재난보건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재난보건심의위원회

제9조(재난보건심의위원회) ①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재난보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6조에 따른 재난건강영향평가의 기본계획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장기 추적조사의 대상 재난 및 집단 선정, 기간, 조사방법, 주요지표 등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재난 노출자 사례관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2. 역학, 예방의학, 임상의학, 정신건강의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보건·복지 행정, 법학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재난 노출자 또는 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재난 노출자 사례관리

제11조(재난 노출자 사례관리) ①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노출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건의료 및 정신건강에 관한 복지서비스를 통합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사례관리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의 내용·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사례관리 전담인력의 자격·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재난보건 수행기관의 지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기관을

재난보건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국립·공립 정신병원

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② 재난보건 수행기관은 지역사회 내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보건 수행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재난보건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재난보건 수행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재난보건 수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취약계층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14조(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강영향평가, 장기 추적조사 및 사례관리 업무 종사자
2. 제8조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종사자
3. 재난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
4. 재난보건 수행기관의 종사자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및 장기 추적조사 등에 참여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의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을 통한 임금, 상여금 등의 차별적 지급

5.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박탈 및 예산·인력 등에 대한 업무상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근무 조건의 차별적 조치

6. 요주의 대상자 명단의 작성·공개, 집단 따돌림 및 폭행·폭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적·신체적 위해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조사 및 그 결과의 공표

②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및 장기 추적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및 장기 추적조사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

②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질병관리청장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재난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